

제5장 이윤의 산정

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(공사,용역)원가 중 노무비,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(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 가공비는 제외한다)에 이윤율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)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.

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2항
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.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공사 : 100분의 15
2. 제조·구매 : 100분의 25
3. 수입물품의 구매 : 100분의 10
4. 용역 : 100분의 10

1. 이윤의 계산

【산식】

$$(\text{노무비} + \text{경비} + \text{일반관리비} - \text{기술료} - \text{외주가공비}) \times \text{이윤율}(\%)$$

2. 이윤산정 시 주요검토사항

구 분	검 토 사 항	검 토 자 료
이윤산정시 대상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료, 외주가공비 등 제외여부 검토 ○ 재료비의 구성요소인 경우 이윤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 및 20조
이윤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한도를 ○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의 한도율을 초과계상 여부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항